

감사직무규정 운영세칙

2010. 12. 31 제정
2012. 02. 15 개정
2013. 02. 07 개정
2015. 12. 07 개정
2017. 06. 13 개정
2018. 03. 08 개정

제 90 조 (신고자 비밀보장) ① 신고사항의 접수·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신고자 등의 신분
2.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
3.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 사업소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,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피신고자 또는 제3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내부신고 DB테이블에 IT담당자 접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며, 신고자에 대한 IP추적을 금지한다.

⑤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91 조 (신분보장) ① 직원은 이 세칙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·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(이하 “불이익 처분”이라 한다)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직원은 주관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·전직·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실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,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

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직원이 내부신고를 한 이유로 다른 사업소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우선 반영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④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협조한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⑥ 인사권자는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상임감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.